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노후화 또는 불필요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며
- 나. 기계식주차장치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자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(안 제12조)
-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2조의5제2항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- 나.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시 최소규모 지정(안 제12조)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규 제 심 사 : 원안의결(2017.11.03. 기획감사실-13603호)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2017.09.29. 기획감사실-11989호)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(2017.08.28. 주민생활지원과-50763호)
- 4) 입법예고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09.08. ~ 09.29.)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- ④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</p> <p>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주차장법

제19조의13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.

1.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(老朽)·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(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)
2.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

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,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.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④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

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19.>

[전문개정 2010.3.22.]

□ 주차장법 시행령

제12조의5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5년을 말한다. <개정 2016.7.19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 <신설 2016.7.19.>

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 <신설 2016.7.19.>

[전문개정 2010.10.21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
연락처	(033) 330 - 2470